

U.S. TRADE ACT ★ SECTION 301



'강제노동' 내세운 미 301조 관세... 한국엔 12.5% 예고

[이주의 초점]

USTR 강제노동 조사 결과 공개...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 (4p)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중국, 전략광물 탐사·채굴·수출 등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14p)

[위클리 뉴스]

한국산 지게차·불도저 등 미 품목관세 15%로 인하
5월 수출 877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에
무역수지는 269억달러 흑자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7p)

[오피니언: 인도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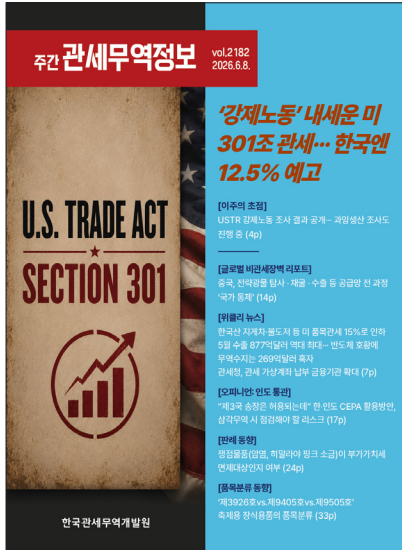
"제3국 송장은 허용되는데" 한·인도 CEPA 활용방안,
삼각무역 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17p)

[판례 동향]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4p)

[품목분류 동향]

'제3926호vs.제9405호vs.제9505호'
축제용 장식용품의 품목분류 (33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6월 8일(통권 제2182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강제노동' 내세운 미 301조 관세...
한국엔 '12.5%' 예고

관세행정실무해설

- 22** 질의응답사례
레저용 칼의 수입요건

07 Weekly News

판례동향

- 24** 조세심판결정례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 14** 중국, 전략광물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본격화

품목분류동향

- 33** 품목분류해설
'제3926호vs.제9405호vs.제9505호'
축제용 장식용품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오피니언

- 17** 시선, 인도 통관
오한흠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제3국 송장은 허용되는데"
삼각무역 시 점검해야 할 원산지 리스크
- 한·인도 CEPA 활용방안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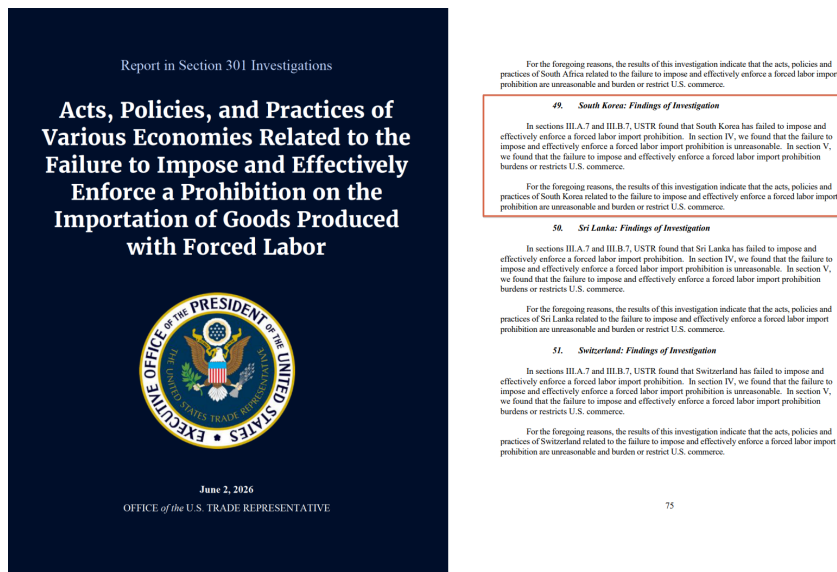
- 40** 세번 바로잡기
상투과자의 HS Code
-

‘강제노동’ 내세운 미 301조 관세··· 한국엔 ‘12.5%’ 예고

USTR 강제노동 조사 결과 공개···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이행 여부를 이유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통상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끈다.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따르면, USTR은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권별 관세율을 공개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경제권 모두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및 한국 관련 페이지(출처: USTR 홈페이지)

USTR은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의무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USTR이 한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6월 3일 보도에서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7월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IEEPA 관세 대체할 ‘301조 관세체계’ 시동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이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6월 3일 발표한 보고서(Can Section 301 effectively replace IEEPA?)에서 최근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Excess Capacity)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미국 통상정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를 통해 미국정부가 연간 최대 1,69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매체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으며, CNBC 역시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국가별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주요 조치”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의 기업책임 담당자 헬레네 드 랭게르브가 “강제노동은 모든 국가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역량만 기준으로 일부 국가를 선별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이 IEEPA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임시 글로벌관세가 7월 24일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특히 USTR은 강제노동 분야 외에도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도 “향후 대응 과정에서 강제노동 조사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EU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한 지난해 미·EU 무역협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르트 랑게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워싱턴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며, “EU 이사회가 2024년 11월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EU의 반 강제노동 규정이 2027년 12월에야 발효되며 핵심 요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마오 닝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에는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USTR 보고서를 부인하며, 강제노동을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 정부 “기존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돼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협상한 한·미 간 관세합의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부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과잉생산 분야 조사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관련 제도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 품목별 예외 폭넓게 적용…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변수

다만 USTR이 제안한 이번 관세가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월 2일 USTR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원유·석유제품, 희토류, 특수금속,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을 포함한 76페이지 분량의 품목 예외 목록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CNBC 역시 전자제품과 인공지능(AI)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한 상당수 품목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D.C.의 컨설팅 기업 캡스톤의 앤드류 기어 전무이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포함해 미국이 매년 수입하는 3조 4,000억달러 상당의 상품 중 절반이 301조 조치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강제노동 분야보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에 더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EU, 중국, 일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된 만큼 IEEPA 관세나 임시 글로벌관세보다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4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조사 진행 속도가 일반인 301조 조사보다 2배 빠르다는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며,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으나 122조 글로벌관세 만료 이전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와 맞물려 최종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업계는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 주목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지게차·불도저 등 미 232조 품목관세 15%로 인하

미국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일부 개편하면서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정부가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는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관세 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다. 반면 관세합의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와 공조설비(HVAC System) 등 일부 품목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도록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포고령에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백악관은 6월 1일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철강 또는 알루미늄 기준으로 중량의 8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용해·주조(melted and poured/smelted and cast)된 경우 1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은 이번 개편으로 신규 관세 대상에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규모가 약 2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포고령과 비교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2025년 대미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그밖에 미국의 통상조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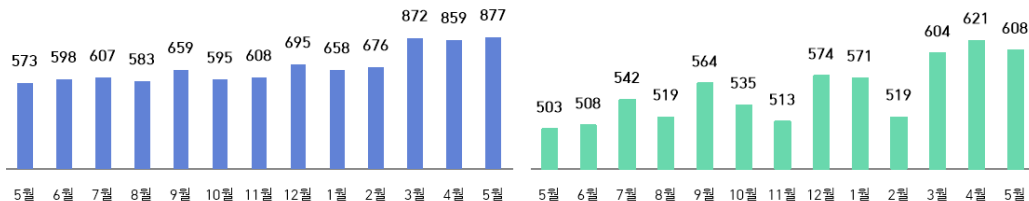
| 김성은 기자 |

5월 수출 877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에 무역수지 269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 5월 수출이 877억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도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산업통상부가 6월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5월 수입은 60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9억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월별 수출액 추이(좌) & 수입액 추이(우) ●



이번 수출 호조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속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는 품목들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AI 데이터 센터용 저장장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수출은 290.7% 증가한 41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비철금속 역시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동·알루미늄 수요 증가로 41.5% 늘었다. 무선통신 기기와 디스플레이 수출도 늘어나며 IT 전 품목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ASEAN 시장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소비재 수출 증가에 힘입어 80.9% 증가한 189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 급증으로 59.1% 증가한 159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ASEAN 수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에 따라 58.4% 늘어난 158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일부 전통 주력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부품 공급 차질, 중동지역 물류 불안,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5.9% 감소했다. 일반기계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 물류비 상승 여파로 6.3% 줄었다.

정부는 이번 수출 실적을 AI 중심의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설비투자가 반도체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수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 미국의 관세 정책,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TRQ) 등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점검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서준식 기자 |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한 OECD, 한국은 2.6%로 0.9%p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상향 조정했다.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6월 3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인 2.9%에서 2.8%로 낮췄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OECD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9%p 상향 조정했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 OECD 경제전망 주요지표 ●

(% , %p)		2026년			2027년		
		3월 전망	6월 전망	조정폭	3월 전망	6월 전망	조정폭
성장률	한국	1.7	2.6	+0.9	2.1	1.9	△0.2
	세계	2.9	2.8	△0.1	3.0	3.1	+0.1
	G20	3.0	3.0	-	3.0	3.0	-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	2.7	2.6	△0.1	2.0	2.2	+0.2
	G20	4.0	4.0	-	2.7	3.1	+0.4

출처: 재정경제부

OECD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확대가 경제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올해 초부터 가격과 물량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민간투자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투자 증가세가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026년 2.6%, 2027년 2.2%로 예상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이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단계적인 정상화를 권고했다.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 전망도 높아졌다. OECD는 종합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7.6%를 반영해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로 추정했다. 성장률 개선에 따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전망도 하향 조정돼 올해 48.2%, 내년 50.2%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026년 52.0%, 2027년 55.0%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주요국 경제 성장률의 경우 미국은 올해 2.0%, 유로존은 0.8%, 일본은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성장률이 0.3%p 하향 조정됐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우리은행 이달 추가

관세청은 6월 1일 기존 농협은행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개편해 우리은행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물, 이사 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우리은행을 추가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접근성과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40% 상당 인하돼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서준식 기자 |

2030년 수출 18억달러 목표 '김', AI 등급제·전문기관으로 세계화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대표 수산식품 수출품목인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놴다. 생산부터 보관,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해 2030년 김 수출 18억달러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6월 4일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김 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와 수급 관리 체계 구축, 가공·유통 고도화,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식품으로 지난해 11억 3,0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글로벌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2030년 마른김 수효는 2억 1,000만속(1속=100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김 업계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김 양식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생산 시기 이전에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연안 양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심 35m 이상 외해양식 확대를 검토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고수온에 강한 신규 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관·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연간 생산되는 마른김의 약 30%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나주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증축하고, 전남권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중부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1개소씩 신설한다.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한다.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급 판정을 받은 마른김은 향후 조성될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칭)’를 통해 거래돼 유통의 투명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현재 5개소인 김 산업 진흥구역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생산·가공·유통·기술개발 기능을 집적한 ‘K-김 특화 블루푸드테크 단지(가칭)’ 조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조미김의 수출 비중을 65%까지 늘리고, 우리식 김 영문 표기인 ‘GIM’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억 8,000만속 이상의 생산체계를 구축해 2028년까지 15억달러, 2030년까지 18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서준식 기자 |

“올리브유처럼 필수 소스” 참기름, 세계 입맛 사로잡으며 수출 역대 최고

한국 참기름 수출이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건강식 트렌드와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참기름이 한식의 ‘필수 소스’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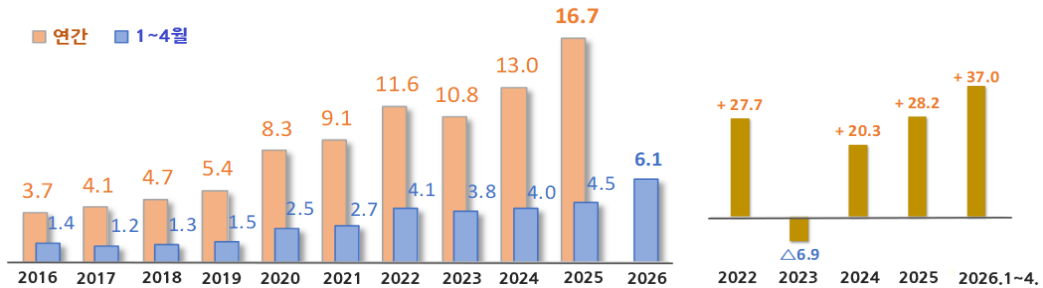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4월 참기름 수출액은 614만달러(약 9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했다. 수출 중량은 47.6% 늘어난 657톤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참기름 수출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24년 1,301만달러(20.3%↑), 2025년 1,668만달러(28.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4월 27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5년 만에 약 2.2배로 늘었다.

참기름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 확대가 꼽힌다. 채식과 웰빙 식단을 선호하는 선진국 소비 트렌드 속에서 최소한의 열처리와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한국산 참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샐러드나 채식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고급 ‘피니싱 오일(Finishing Oil)’로 인식되면서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유기농, 할랄(Halal), 코셔(Kosher) 등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튜브형 포장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등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에 성공했다.

● 수출액 현황(좌) & 수출 증감률(우) ●



단위: (좌) 100만달러, (우) 전년 동기 대비 %

2026년 1~4월 기준 참기름 주요 수출국은 미국(260만달러·41.7%)이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60만달러·9.6%), 대만(50만달러·7.6%), 호주(50만달러·7.4%), 네덜란드(30만달러·5.3%)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수출의 51.3%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8%, 캐나다는 249.0% 늘었다. 미국은 2013년 이후 14년 연속 수출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4.0%에서 올해 4월 기준 41.7%로 확대됐다. 호주 역시 지난해 수출(230만달러)이 2024년 대비 167.9%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4월에도 29.7% 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럽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4월 기준 네덜란드 수출은 59.9% 증가했으며, 유럽 전체 수출액은 7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 강경훈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건강식 트렌드와 K-푸드 확산에 힘입어 참기름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와 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중동 정세 장기화에 중소기업 비상… ‘원가 상승·공급 부족’ 이중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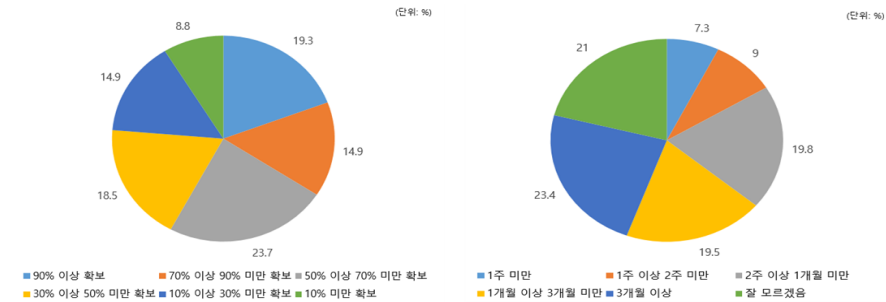
중동 정세 악화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공급 제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원부자재를 수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4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결과를 6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석유화학 원료와 비철금속, 건설·토목자재, 전기·전자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동 정세 이후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으로는 ‘원가 부담 증가’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부자재 물량 부족’ 응답도 80.7%에 달해 원가 상승과 공급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말 대비 주요 원부자재 평균 매입단가가 20%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특히 포장재·필름·종이를 사용하는 기업군에서는 원부자재 가격이 80%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집계돼 전체 평균인 15.1%를 크게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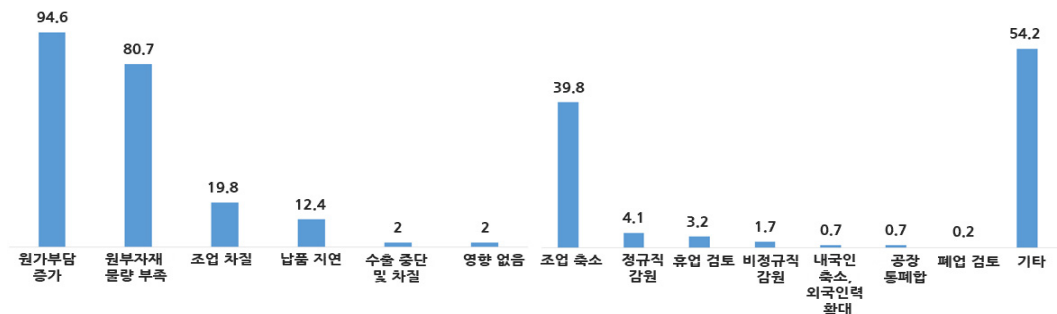
● 평상시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재고량(좌) & 현재 보유 원부자재 재고 소진까지 예상 시간(우) ●



재고 상황도 여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재고를 7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65.9%였으며, 현재 보유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도 36.1%에 달했다.

중동 정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응 계획으로는 ‘기타’가 54.2%, ‘조업 축소’가 39.8%였다. 특히 ‘기타’라고 응답한 기업 222개사 가운데 204개사가 ‘별도 계획 없음’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 기업의 49.7%가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중동 정세에 의한 생산활동 변화(좌) & 3개월 이상 중동 정세 지속 시 향후 계획(우) ●



단위: %, 복수응답(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포장재나 플라스틱 등 기초 원부자재의 공급 차질은 식품·생활용품 등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료사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의 공급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준식 기자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이번 호에는 중국정부의 전략광물 관리 강화 취지가 담긴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전략광물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본격화

6월 15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 시행... 탐사·채굴·비축·수출까지 국가 관리

중국이 전략광물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광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은 물론, 가공·무역·비축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자원 공급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20일 리창 총리가 서명한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공포,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인 ‘광물자원법’의 세부 실행 규정을 담은 후속 입법으로, 총 8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정부는 조례의 목적을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광업의 고품질 발전, 자원안보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조례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략광물 지정되면 채굴·비축·수출 모두 국가 승인 필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략광물에 대한 통제 강화다. 조례에 따르면 전략광물 목록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뒤 국무원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한다. 지정 기준은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발전·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광물인가, ▲국내에 자원이 충분히 있는가, ▲해외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가, ▲관련 산업·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가, ▲기타 정책적 판단 등이다.

아직 구체적인 전략광물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수출통제 대상으로 관리해 온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에는 텅스텐, 갈륨, 흑연 등 중국이 그동안 수출통제 조치를 한 광물과 희토류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중국정부는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의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략광물 광업권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전략광물 비축 체계를 법제화했다. 조례는 ▲실물 광물과 가공품을 확보하는 ‘제품 비축’, ▲필요시 생산량을 즉시 늘릴 수 있는 ‘생산능력 비축’, ▲미·저개발 상태로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광산을 지정하는 ‘광산지 비축’ 등 이른바 ‘3중 비축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광산지 비축 대상으로 지정된 광산은 국무원 승인 없이는 채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5월 28일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례는 국가가 광물의 탐사·채굴·가공·무역·비축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희토류 이어 공급망 전 과정 행정처벌 체계 구축

중국의 광물 통제는 희토류 분야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성봉 애널리스트는 6월 1일 ‘철강금속 위클리’를 통해 “중국정부의 광물자원 정책 기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며, “기존의 개발 중심 정책에서 국가안보·외교 차원의 전략자원 통제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규정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다. 해당 조례는 희토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부터 제련, 분리, 유통, 수출입까지 공급망 관리와 총량 규제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총량 통제 위반, 비허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희토류에 먼저 적용된 공급망 통제 모델이 향후 전략광물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조례 제74조는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진입 허가 특별 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광물 분야에서는 투자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조례 제76조는 중국의 광물자원과 관련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지역 및 국제기구에 대해 '반제(反制)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이미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한층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KOTRA는 "과거에는 중국정부가 행정적으로 수출을 통제했다면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한국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방산, 첨단소재 산업에서 희토류와 흑연, 리튬, 갈륨, 게르마늄 등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다.

KOTRA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전략광물 의존도를 점검하고 희토류·흑연·리튬·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전략광물 지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요 광물별 대체 공급처 확보와 적정 재고 수준,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 조치, 광물 수출입계약 내 공급중단 대응 조항 및 불가항력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의 김진희 연구원은 본지 전문가 칼럼(제2165호, 2026.2.2. 발행)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통제법과 같은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합법적 국가 행위로 제도화된 것이다"라며, "이러한 통합·정비된 법제도가 있기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제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신속하게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전략광물의 생산·무역·비축·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아직 전략광물 최종 목록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지정 대상 광물과 후속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한국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사가 한·인도 CEPA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제3국 송장은 허용되는데” 삼각무역 시 점검해야 할 원산지 리스크

- 한·인도 CEPA 활용방안 ⑤ 삼각무역에서 CEPA의 구조적 한계



오 한 흠 |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 본 콘텐츠는 2026.3.23. 발행된 본지 제2171호 ‘오피니언-시선, 인도 통관’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칼럼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구조,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분류의 중요성, 그리고 CAROTAR(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체계에서의 Form I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로 다룰 주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협정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중개인을 통한 삼각무역 구조다.

오늘날 한국 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직접거래’ 구조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홍콩·싱가포르 등 제3국 중개상을 경유하는 구조도 적지 않으며, 가격·계약·대금 흐름이 제조자와 분리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이,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계산 논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3국 송장의 허용과 원산지증명서의 기준가격



출처: AI 생성 이미지

한·인도 CEPA는 제3국 송장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 중개상 명의의 송장으로 인도에 수입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제3국 송장이 허용된다는 것과 역내부가가치 창출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산정의 기준 가격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RVC 산정은 기본적으로 역내에서 형성된 수출자의 본선인도 조건(FOB, 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한·인도 CEPA는 역내에서 창출한 실질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즉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는 역내 수출자의 FOB 수출가격이 기재되며,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본 수출자의 FOB 수출가격 기준이다. 하지만 중개상은 실무적으로 자사의 마진 구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에 본 수출자의 가격이 아닌, 중개상 인도향 판매가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RVC 계산은 다음과 같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CEPA 원산지 결정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35% 이상 RVC(임의 값)
- 본 수출자 FOB 가격: 100
- 비원산지 재료 가격: 70
- 역내창출부가가치: 30

이 경우 RVC(공제법)는 역내창출부가가치(수출자 FOB 가격-비원산지 재료 가격)÷수출자 FOB 가격인 30%로,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개상이 20의 마진을 붙여 인도에 120으로 판매할 경우를 가정하면, RVC(공제법)는 $(120-70) \div 120 = \text{약 } 41.7\%$ 로 계산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 중개상 판매가격: 120
- 비원산지 재료 가격: 70(변동 없음)

이처럼 중개상의 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산정할 경우,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닌 역외 유통 단계의 이익까지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협정의 설계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삼각무역 구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 수출자 기준 FOB 가격을 중심으로 RVC를 산정하는 접근이 협정의 논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CAROTAR 체계에서의 가격 신뢰성 문제

이 문제는 CAROTAR 체계에서 더욱 민감해진다. CAROTAR는 협정세율 적용 책임을 수입자에게 귀속시키고, Form I를 통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입증하도록 한다. 그러나 삼각무역 구조에서는 인도 수입자가 실제 제조자, 역내 수출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상 수출가격이 중개상 판매가격으로 기재돼 있으나, 본 수출자의 실제 FOB 가격이 다를 경우, 인도 세관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RVC 산정 기준 가격은 누구의 가격인가?
- 역내 제조 단계의 실제 부가가치와 일치하는가?
- 중개상 마진이 역내 부가가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

CAROTAR 체계는 ‘합리적인 의심’을 전제로 검증이 이뤄진다. 가격 기준의 불일치는 곧 Form I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제3국 송장이 허용된다고 해서 가격 기준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계·세무·외환 리스크

간혹 수출기업은 “중개상의 인도향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만 발급된다면 CEPA 적용 및 통관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중개상의 요청대로 원산지증명서를 중개상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적이다.

우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출가격과 실제 본 수출자가 수취하는 거래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FOB 가격의 정합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한·인도 CEPA상 RVC 계산은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삼각무역 구조에서는 이 가격에 중개상의 유통 마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도 세관은 CAROTAR 체계에서 해당 가격이 실제 생산 구조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가격 구조는 통관 문제를 넘어 회계·세무 및 외환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상 수출가격이 중개상의 인도향 판매가격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한국 수출기업이 수취하는 금액은 제조자 기준 거래가격에 불과한 경우, 서류상 가격과 실제 거래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출신고 가격, 외환 수취금액, 계약상 거래가격 사이의 정합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개상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CEPA 적용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원산지 계산의 논리, 세관 검증 가능성, 그리고 거래 구조의 회계적 정합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한계의 본질

삼각무역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본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로 설계된 협정이다.

이 두 구조가 충돌하면, 협정상 기준이 되는 본 수출자의 FOB 가격과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중개상의 판매가격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상 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거나 RVC 설명이 이뤄지면 중개 마진 구조가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 검증 단계에서 가격의 정합성과 신뢰성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회계·세무 등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협정 활용은 단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의 정합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한·인도 CEPA에서 삼각무역 구조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제3국 송장이 허용된다는 형식적 제도와, 협정이 전제로 하는 본 수출자 FOB 기준의 원산지 계산 구조, 그리고 실제 공급망에서 형성되는 중개상 중심의 가격 구조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실무 점검 사항

삼각무역 구조에서 한·인도 CEPA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협정 적용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가격 구조,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실제 관세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가깝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계약 단계에서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원산지증명서상 수출가격과 RVC 산정의 기준이 되는 FOB 가격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삼각무역 구조에서는 중개상의 인도항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중개상의 마진 노출 가능성이나 수출자의 회계·외환 관리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가격 기준과 정보 공개 범위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원산지 입증에 위한 정보 제공 범위를 사전에 합의할 것

중개상은 자사의 마진 구조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조자 역시 원재료 구조나 원가 정보 공개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CAROTAR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필요할 경우 생산 구조나 원재료 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필요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등을 통해 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관세 절감 효과와 리스크를 함께 비교할 것

한·인도 CEPA 협정상 완전 면세가 아닌 잔여세율이 있는 품목의 경우 협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 절감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가 구조 노출, 세관 검증 대응 부담, 거래 구조 조정 비용 등 잠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Form I 관리에 수출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

CAROTAR 제도상 협정세율 적용 책임은 인도 수입자에게 있지만, 실제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제조자나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자는 Form I에 기재되는 가격 기준과 원산지 계산 논리가 협정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EPA 활용의 현실과 과제

삼각무역 구조에서는 한·인도 CEPA 적용이 단순한 원산지 계산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정 계산의 기준이 되는 FOB 가격, 실제 제조자가 수취하는 거래가격, 그리고 중개상의 판매가격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AROTAR 제도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필요할 경우 가격 구조나 생산 공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삼각무역 구조에서 CEPA를 활용할 때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가격 기준 설정, 정보 제공 범위, 그리고 거래 구조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CEPA 활용은 협정 적용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협정 규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 레저용 칼의 수입요건

HS Code 제8211.92-0000호에 분류되는 레저용 칼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제8211.92-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에 속하는 레저용 칼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 가능합니다.

-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 [수입승인서(방위산업용품)]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품목분류 / 동치미 숙성액의 HS Code

무와 기타 부원료들을 분쇄해 발효한 뒤 기타 부재료를 첨가해 살균 처리한 동치미 숙성액의 HS Code를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구체적인 성분, 성상, 용도, 제조공정도 등)’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한 물품이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2103.90-909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2103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전(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2103.90-9090호
품명	Mixed seasonings; 동치미엑기스 H
물품 설명	- 무 77.83%, 마늘, 대파, 생강, 정제소금, 분말결정포도당을 분쇄, 숙성, 여과한 것에 설탕, 정제소금, 덱스트린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냉면소스 제조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징수 / 담보제공 생략대상

담보제공 생략대상일 경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시 담보제공이 생략되나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어 담보제공 생략대상이라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② 세관장은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9조에 따라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고시상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번호: 조심2026관0003(2026.3.9.)

청구인: ○○○

주문: 부산세관장이 2025.8.20. 및 2025.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10.부터 2021.2.22.까지 ○○○ 소재 A로부터 암염(巖鹽)의 일종인 히말라야 핑크 소금(CRYSTAL SALT-LIGHT PIN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501.00-1010호(기본세율 1%)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2025.8.5.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8.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25.8.20.과 2025.9.23. 청구인에게 제척기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호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물품은 천연광물 자연 상태의 소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여 왔다.

(나) 쟁점물품은 성분분석 결과 염화나트륨이 98.92%, 수분 0.1%, 불용성 물질 0.11%로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일염 수준일 뿐 다른 화학적 가공은 없었다.

(다)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물품의 공정도에 따르면 채굴 → 세척 → 제1차 건조 → 분류 → 분쇄 → 제2차 건조 → 분급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금속탐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장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의 소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2024.11.14.)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은 ‘기타 소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암염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화학적 가공이 아닌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자연 상태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해석에서도 자연 상태의 소금이 아닌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단순 채굴 후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된 후 화학적 공정이 아닌 물리적 공정을 거쳐 제조된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현품검사 등을 거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4건의 수입신고 중 3건은 검사생략으로 수리하고, 1건[수입신고번호 ○○○(2020.9.28.)]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직원이 현품을 검사한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석의뢰 등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처분청이 현품검사를 수행하고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하였다면 청구인도 이후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 관련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처분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는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암염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천일염과 재제 소금으로 한정되므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 미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이란 천일염과 재제 소금에 한정되며, 태음·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은 소금 광산에서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금 광석을 채굴하여 이를 세척, 건조, 분쇄하여 얻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물품과 같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유형의 암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 국세청장은 암염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천일염 및 재제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3.17.).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물품의 외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식품유형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에도 '유형 또는 품목'란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 및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부적정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징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적정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42조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확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한편,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였다거나(제1호),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8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을 천일염과 재제 소금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이 아니라 기타 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암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중략> ...

⑥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중략> ...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규칙」

■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 「국세기본법」

■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외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산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서 소금 광산에서 채굴된 암염의 일종이다. 쟁점물품은 소금광산에서 채굴된 암염을 분쇄·선별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한 후, 포장 겉면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위 스티커에 기재된 식품유형은 '기타 소금'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천연상태의 암염으로 화학적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수출자가 제공한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염화나트륨 98.92%, 수분 0.1%, 불용성 물질 0.1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물품의 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굴 → 세척 → 제1차 건조 → 분류 → 분쇄 → 제2차 건조 → 분급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금속탐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장의 순서로 가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면세대상으로 보아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2020.9.28.)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직원이 현품을 검사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에 따르면 식품유형을 ‘기타 소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암염에 대한 국세청장 질의회신사례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6.18.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성분은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연염 수준이고,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암염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화학적 가공이 아닌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는 소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암염은 천일염 또는 재제 소금이 아닌 기타 소금으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외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식품유형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 및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를 승인한 점, 이와 같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의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소신고가산세)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926호vs.제9405호vs.제9505호’ 축제용 장식용품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진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개요

올해 5월 날씨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았다. 특히 한여름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불교 신자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이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에 주로 축제 시즌을 즐기는데 이에 따라 각종 축제용품들이 겨울을 앞두고 일찌감치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축제용품은 동양과 서양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견이 있어 종종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도 품목분류가 쟁점이 돼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 WCO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용품 또는 장식용품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관세청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인 ‘HS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하는데, 이 의견서는 국내 품목분류 결정 시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독자들은 수출입신고 시 유사한 물품이 HS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돼 있으면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축제용품과 장식용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쟁점 사례

1.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

물품 설명	야외용으로 사용되는 산타클로스 모양의 장식으로서, 다양한 색상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제작됐으며 내부에서 104개의 온화한 백색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있음.
-------	---

2. 쟁점 세번

1) 제9405호: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9505호: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3. 의견

1) 제9405호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luminaire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현관 램프·대문 램프; 공공건물용·기념건물용·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라고 설명하므로 야외용으로 설치돼 조명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은 해당 해설서 내용과 유사함.

또한 쟁점물품은 내부에는 104개의 온화한 백색 LED가 있어 쟁점물품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제9405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제9505호 해설서에서 “(A)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 <후략>”라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은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 재료로 제작된 것이므로 제9505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조명기구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5호에 분류함.

2) 제9505호

제94류 주 제1호 카목에서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ning string)은 제외한다](제9505호)”를 제외하므로 제9505호를 우선 검토함.

제9505호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9505호 해설서에서 “(1)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이라고 설명하므로 크리스마스 축제에 주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해당 해설서 내용에 부합함.

또한 쟁점물품의 몸체는 빛을 직접 제공하거나 초점을 맞춰 주변을 볼 수 있게 하거나, 특정 영역을 조명하거나, 제품 외부의 물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대신 각각의 개별 LED가 제품 자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배치돼 외부 조명이나 방의 조명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9405호의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5호에 분류함.

3) 논의 결과

WCO 논의 시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한 장식품이므로 제3926.40호에 분류한다는 소수 주장이 있었고, 다른 국가에서는 쟁점물품은 LED가 부착된 내구성 있는 재질의 조명기구이므로 제9405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논의 결과 대다수의 국가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조명기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용하는 장식품으로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9505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쟁점물품을 제9505호로 결정했다. 6단위 소호와 관련해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특게돼 있는 제9505.10호로 결정됐으며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9505.10 1. 산타클로스 형상의 플라스틱 축제 용품

산타클로스 형상의 플라스틱 축제용품으로 내부에 104개의 LED가 있어 빛이 나며 실외 용으로 사용. 크기는 높이 55cm, 폭 28.5cm, 깊이 25.5cm.
전원 코드는 본 물품을 3.6W 변압기에 연결하고, 출력전압은 24V임. 광원당 효율은 0.03W.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3926.40/1, 9505.10/1, 9505.10/3 및 9505.10/4 참조



III. 사례 해설

지금까지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에 관한 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쟁점물품 관련 WCO의 세부 검토사항과 WCO HS위원회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앞서 쟁점물품 논의 시 제일 먼저 법적인 주 규정으로서 제94류 주 제1호 카목을 검토했다. 제94류에서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를 제외해 제9505호에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4류 주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 제94류 주 제1호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은 제외한다](제9505호)

‘중국등(燈)(Chinese lantern)’은 캠브리지 사전에서 “a decoration made from thin, folded, coloured paper with a light inside”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한다.



이번 WCO 논의 시 제94류 주 제1호를 적용해 ‘중국등(燈)’과 유사한 장식용품을 제9405호의 조명기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즉, 제94류 주 제1호에서 ‘중국등(燈)’도 일부 조명 기능이 있어도 실제 제작 의도는 ‘조명기구’보다는 ‘축제용품’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처럼, 쟁점물품도 제94류에서 제외돼 제9505호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로 국문 번역과 관련해, 제94류 주 제1호의 원문인 “(l) <전략> ... furniture for conjuring tricks or ‘decorations’ (other than lighting strings) such as Chinese lanterns (heading 95.05)”으로 돼 있다.

현재 국문에서는 ‘decorations’를 ‘장식용 가구’로 번역했지만 ‘중국등(燈)’은 제9403호의 ‘가구’가 아니고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장식용품’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또한 제9505호의 해설서 규정과 같이 축제용품을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설명하므로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제9505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 제9505호 해설서

(A)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generally made of non-durable material)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 [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

논의 결과,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어 비내구성 재료는 예시인 것으로 판단했고, 내구성 재료로 제조된 것도 제9505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로는 유사한 물품에 대한 WCO의 결정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는 펭귄 가족 모양의 장식용품에 관한 WCO 결정사례다.

3926.40 1. 플라스틱 장식용품

펭귄 가족 모양으로 제시된 플라스틱 장식용품으로 실외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식용품 내부에 48개의 LED로 인해 빛난다. 본 물품은 실내나 외부의 조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두 마리의 펭귄이 서로 붙어서 하나의 조각을 이루고, 높이 23cm, 너비 26cm이며, 세 번째 펭귄의 크기는 높이 22.5cm, 너비 14cm이다. 전원코드는 소비전력이 3.6W, 출력전압이 24V의 변압기에 물품을 연결한다. 광원당 소비전력은 0.02W이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적용 의견서 9505.10/1 참조



위 물품은 제3926호의 장식용품과 제9405호의 조명기구가 쟁점이 된 사례다. 48개의 내부 LED가 있으며 실외 플라스틱 장식용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이 물품은 용도 측면에서 조명용보다는 실외에서 장식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봐 제3926호로 결정된 것이다. HS품목분류의견서상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근거 규정으로 제3호 나목을 사용해 주된 용도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호 결정 시 제3926.40호에 플라스틱제 장식용품이 특개돼 있어 제3926.40호로 결정됐다.

이 펭귄 가족 모양의 장식용품은 특정한 축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9505호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조명기구와 장식용품의 쟁점이 이번 산타클로스 축제물품과 유사하고 WCO에서도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의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3926.40/1인 펭귄 모양의 장식용품을 참고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개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창문 장식용품의 WCO 결정사례다.

9405.49 1. 창문 장식용품

양면 디자인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창문 장식용품
모양을 형성하는 프레임에 부착된 와이어에 50개 색상의 전구가 있다. 조명 제품은 실내 및
실외용이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류 주 제1호 버목) 및 제6호 적용



이 물품도 제9405호(조명기구)와 제9505호(축제용품)가 쟁점세번으로 논의됐다. 이 물품은 50개의 전구가 있는 조명기구로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제조된 것이다.

이 창문 장식용품은 이번 산타클로스 장식용품과 용도면에서 유사하나, 적용 주 규정의 차이에 따라 제9405호로 결정됐다.

■ 제94류 주 제1호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은 제외한다] (제9505호)

■ 제95류 주 제1호

버. 각종 조명용 스트링(제9405호)

우선 제94류에서는 축제용품이 제94류 주 제1호 카목에 따라 제외돼 제9505호로 분류되지만, ‘조명용 스트링’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제9405호로 분류된다. 이는 제95류 주 제1호 버목에서도 ‘각종 조명용 스트링’을 제외해 제9405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창문 장식용품은 축제용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94류와 제95류의 주 규정으로 인해 조명용

스트링(제9405호)으로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9405호로 분류된 것이다.*

* 창문 장식용품의 HS품목분류의견서상 통칙 근거 규정으로 ‘통칙 제1호(제95류 주 제1호 버목)’를 적시하고 있어 제95류 주 제1호 규정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규정에서는 모든 조명기구를 제95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용 스트링’만 제95류 대신 제9405호로 우선 분류되므로 창문 장식용품은 소호 결정 시 제9405.49호로 검토됐다. 특이한 사항은 제9405.3호에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이 특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문 장식용품은 제9405.3호가 아닌 제9405.4호에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는 제9405.3호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은 크리스마스 트리 등에 직접적으로 장식을 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기 창문 장식용품은 창문을 장식하므로 소호 분류 시 제9405.4호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축제용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류 주 규정과 호(소호)의 용어를 면밀하게 살펴야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시사점

이번 호에서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에 대한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사한 WCO 결정사례를 함께 검토했고 이를 통해 장식용품(제3926호), 조명기구(제9405호) 및 축제용품(제95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검토했다.

특히 제94류에서는 ‘중국등(燈)(Chinese lantern)’과 같은 축제장식용품을 제9505호로 제외함을 알았고, 제95류에서는 ‘조명용 스트링’을 제외해 제9405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장식용 가구’로 번역된 ‘decorations’의 번역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축제용품에 대한 동서양 및 개인의 개념 차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처럼 관련 축제용품인 연등, 각종 조형물 등도 제9505호로 분류되는지는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축제용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품의 기능,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 적절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상투과자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출처: AI 생성 이미지)

어릴 때 자주 사 먹었던 추억의 간식인 밤과자(상투과자)는 흔히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라고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백앙금이라고 알려진 강낭콩앙금을 주원료로 하며 설탕, 계란 등을 넣어 상투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것이다.

앙금은 강낭콩앙금 외에도 완두앙금, 팥앙금 등이 있는데, 원료를 삶아 곱게 으깨 만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밀가루 등 곡물가루와 계란, 버터 등을 이용해 만드는 베이커리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완두앙금에 물엿, 설탕 등을 넣어 원형으로 만든 후 구운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에 해당하는 제1905.90-1040호로 신고됐다.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40호에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가 세분류된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 … <중략> … 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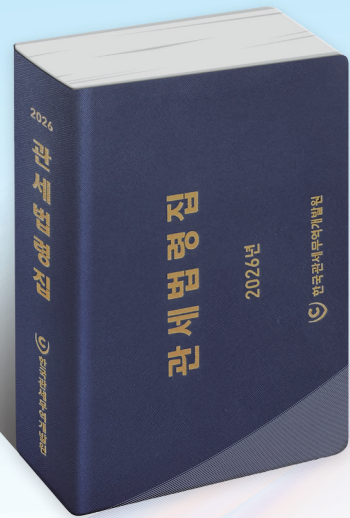
따라서 본 물품은 완두를 삶아 으개 만든 완두앙금에 물엿, 설탕 등을 혼합해 원형으로 만든 후 구운 것으로 조제한 완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40-0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BISCUITS, COOKIES AND CRACKERS	1905.90-1040 (FEU1 0%)	Peas preparation	2005.40-0000 (FEU1 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한금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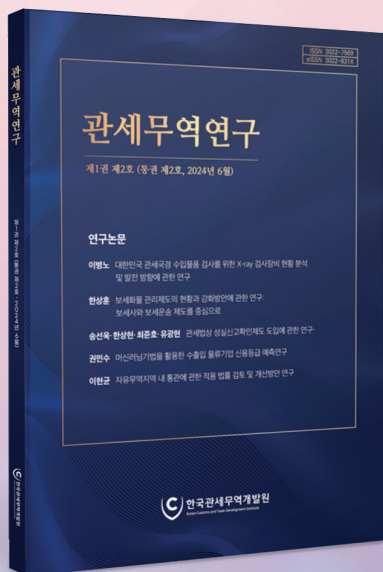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